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. **계약기간** :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(계약기간)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, 장기요양 1~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.
2. **계약목적** :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3. **입소보증금** :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~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 받은 입소자,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.
 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-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
 - 가.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. (다만,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.)
 - 나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)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4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(2020년 1월 기준)

구 분			1등급	2등급	3~5등급
급여항목	일일수가		70,990	65,870	60,740
	월(30일 기준)		2,129,700	1,976,100	1,822,200
	공단부담금(80%)		1,703,760	1,580,880	1,457,760
	본인부담금(20%)		425,940	395,220	364,440
	감경대상자	(8%)	170,370	158,080	145,770
		(12%)	255,560	237,130	218,660
	기초수급권자(0%)		0	0	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	해당없음.		
	식대비 (1일)	일반식	1일 6,000원(1식 2,000원) 오전/오후 간식포함		
		경관/유동식	칼로리 처방전에 의함. 200kca (200ml) 1캔= 820원		
	이/미용료 등		비청구 (자원봉사자 활용)		
총 비 용 (급여+비급여 비용)	일반수급권자(20%)		605,940	575,220	544,440
	감경대상자	(8%)	350,370	338,080	325,770
		(12%)	435,560	417,130	398,660
	기초수급권자		0	0	0

5.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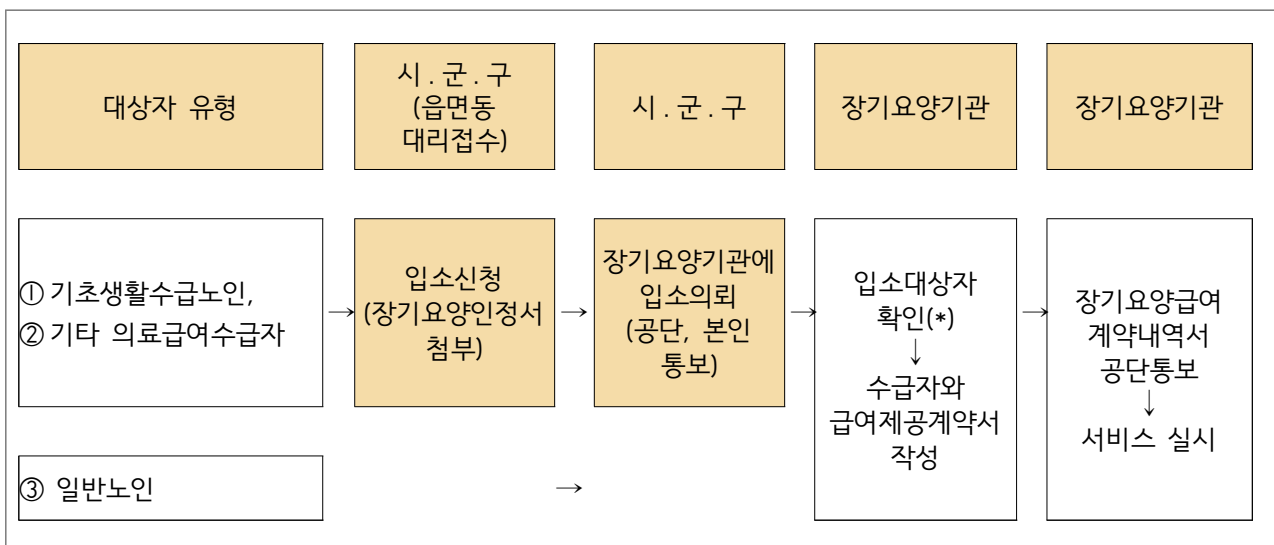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-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

6. **계약의 해제** :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자(보호자)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7. **입소보증금의 반환** :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8. 입소절차



9. 입소신청 시 준비사항

- ▶ 장기요양 인정서류 (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
- ▶ 건강진단서 1부(결핵검진 포함,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의 진단서)
- ▶ 현재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및 소견서와 복용중인 약 처방전
- ▶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